

소 장

원고

1. 우방캐피탈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내수로 167

대표이사 전영표

지배인 최홍만

2. 우방신용보증보험 주식회사

서울 중구 종림로7길 23-16

대표이사 배춘택

지배인 이태현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27, 301호

전화: 525-1233, 팩스: 525-1234, 전자우편: yssa@naver.com

피고

1. 김수경 (500125-2047235)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23, 2동 206호(여의도동, 장미아파트)

2. 유재석 (860325-1298557)

서울 동대문구 이문로 981

3. 박수용 (730108-1025429)

서울 강남구 언주로 21, 117동 402호(개포동, 주공아파트 2차)

4. 김수철 (460611-1547473)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9, 209동 1304호(여의도동, 미도아파트)

5. 최종찬 (681227-1963456)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 김수경은, 가. 원고 우방캐피탈 주식회사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2. 1.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월 1%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원고 우방신용보증보험 주식회사에게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월 1%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우방신용보증보험 주식회사와 피고 유재석 사이에서, 가. 피고 유재석과 피고 김수경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16. 1. 3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유재석은 피고 김수경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영등포동기소 2016. 1. 31. 접수 제191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원고들과 피고 박수용 사이에서,
가. 피고 박수용과 피고 김수경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제2부동산에 관하여 2017.8.31. 체결된 매매계약을 22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박수용은,
 - 1) 원고 우방캐피탈 주식회사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9. 1.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월 1%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각 이에 대한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 2) 원고 우방신용보증보험 주식회사에게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원고들과 피고 김수철, 최종찬 사이에서,
가. 피고 김수철과 피고 김수경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제3부동산에 관하여 2017.9.2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김수경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3부동산에 관하여,
 - 1) 피고 김수철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동기소 2017. 9. 25. 접수 제2975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피고 최종찬은 같은 등기소 2017. 9. 27. 접수 제3345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6.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피고 김수경에 대한 금전청구

가. 원고 우방캐피탈 주식회사의 채권

1) 원고 우방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우방캐피탈'이라고 합니다.)는 2013. 10. 8. 소외 주식회사 개성금속(이하 '개성금속'이라고 합니다.)에게 10억 원을 변제기 2015. 11. 30., 이자 월 0.5%, 지연손해금 월 1%로 약정하여 대여하였습니다(갑 제1호증). 피고 김수경은 위 개성금속의 대표이사로서 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 소유의 용인시 구성면 언남리 115-1 공장용지 5,124㎡(이하 '공장용지'라고 합니다.)에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3. 10. 8. 접수 제11887호로 채권최고액 1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갑 제2, 3호증), 개성금속의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습니다(갑 제1호증).

2) 개성금속이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기까지의 이자만 납부한 채 2015. 12. 1. 부도를 내고 도산하자, 원고 우방캐피탈은 2016. 4.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2016타경8654호로 당시 시가 11억 원이던 위 공장용지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8. 1. 31. 9억 6,000만 원을 배당 받았습니다(갑 제6호증). 위 9억 6,000만 원을 민법 제479조에 따라 개성금속에 대한 원고 우방캐피탈의 대출 원금 10억 원에 대한 변제기 다음날인 2015. 12. 1.부터 배당일인 2018. 1. 31.까지 2년 2개월 간의 지연손해금 2억 6,000만 원(10억원 × 월 1% × 26월, 갑 제4, 5호증)과 원금에 순차로 변제충당하면, 2018. 1. 31. 현재 대출 원금 3억 원이 남게 됩니다.

3) 그러므로 피고 김수경은 위 연대보증약정에 따라 원고 우방캐피탈에게 위 대여금 잔금 3억 원 및 이에 대한 최종 지연손해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8. 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월 1%의 비율에 의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 원고 우방신용보증보험 주식회사의 채권

1) 원고 우방신용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에서는 '우방신용'이라고 합니다.)는 2014. 12. 1. 개성금속이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에서는 '신한은행'이라고 합니다.)으로부터 2억 원을 변제기 2016. 11. 30., 이자 월 0.5%, 지연손해금 월 1%로 약정하여 대출받을 때 그 대출금반환채무를 신용보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신용보증 시 개성금속은, 원고 우방신용이 신한은행에 개성금속의 위 대출금을 대위변제할 경우 원고 우방신용에게 위 변제금 및 이에 대한 변제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1%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하기로 하였고, 피고 김수경은 개성금속의 원고 우방신용에 대한 위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하였습니다(갑 제7호증).

2) 개성금속이 2015. 12. 1. 부도를 내자, 원고 우방신용은 2015. 12. 1. 당시까지 개성금속이 신한은행에 부담하고 있던 대출원리금 전액 2억 2,000만원을 대위변제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 김수경은 원고 우방신용에게 2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월 1%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2. 피고 유재석, 박수용, 김수철, 최종찬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

가. 피고 김수경의 2016. 1. 31.자 사해행위

1) 피고 김수경의 2016. 1. 31.자 대물변제

피고 김수경은 2016. 1. 31. 동생의 아들인 피고 유재석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이하에서는 부동산 표시 앞의 "별지 목록 기재" 부분을 생략합니다.)을 자신의 채무 4억 원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양도하기로 하고, 서울남지방법원 영등포동기소 2016. 1. 31. 접수 제1912호로 2016. 1.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갑 제8호증).

2) 당시 피고 김수경의 재산상태

2016년 1월 31자 당시 피고 김수경은 ① 원고 우방캐피탈에 10억 2,000만 원 (대출원금 10억 원 +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월 1%씩 2월분 2,000만 원), ② 원고 우방신용에 2억 2,440만 원(대위변제원금 2억 2,000만 원+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월 1%씩 2월분 440만 원), ③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1억 3,000만 원(제2부동산의 1번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갑 제11호증), ④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5,000만 원(제2부동산의 2번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갑 제12호증), ⑤ 최상수에게 1억 원(제2부동산의 3번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갑 제13호증), ⑥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3억 원(제3부동산의 1번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갑 제14, 15호증), ⑦ 연흥보에게 1억 원(임차보증금반환채무; 갑 제16, 17호증), ⑧ 신용보증기금에 2,000만 원(갑 제18호증), ⑨ 피고 박수용에게 3,000만 원(갑 제16호증), ⑩ 피고 유재석에게 4억 원 등 합계 23억 7,44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2016. 1. 31. 당시 피고 김수경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은 위 공장용지(당시 시가 11억 원), 제1부동산(당시 시가 4억 원), 제2부동산 (당시 시가 5억 원), 제3부동산(당시 시가 3억 3,000만 원) 등 합계 23억 3,000만 원 정도였으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습니다.

3) 피고 김수경의 사해의사 및 피고 유재석의 악의

피고 김수경의 위 대물변제행위는 원고 우방신용을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더욱 감소시키는 행위임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이고, 피고 유재석도 피고 김수경과의 신분관계상 위 대물변제가 원고 우방신용 등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4)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그러므로 원고 우방신용과 피고 유재석 사이에서, 피고 유재석과 피고 김수경이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16. 1. 31. 체결한 매매(대물변제)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유재석은 피고 김수경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 남부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 2016. 1. 31. 접수 제191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 피고 김수경의 2017.8.31.자 사해행위

1) 피고 김수경의 2017. 8. 31.자 매매

피고 김수경은 2017. 8. 31. 그의 사위인 피고 박수용에게 제2부동산을 매도하고, 피고 박수용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7. 9. 17. 접수 제8055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갑 제9, 10호증).

2) 2017. 8. 31. 당시 원고들의 피보전채권

당시 원고 우방신용은 피고 김수경에게 2억 6,620만 원(2015. 12. 1. 신한은행에 대위변제한 원금 2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1. 부터 2017. 8. 31.까지 21월 간 월 1%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원고 우방캐피탈도 피고 김수경에게 원금 10억 원과 이에 대한 2015. 12. 1.부터 2017. 8. 31.까지의 지연손해금 2억 1,000만 원(10억 원 × 월 1% × 21월)을 합한 12억 1,000만 원의 연대보증금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고 우방캐피탈은 김수경에 대한 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공장용지에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3. 10.. 8. 접수 제11887호로 채권최고액 15억 원의 1번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으나(갑 제2호증), 위 부동산의 2017. 8. 31. 당시의 가액은 11억 원에 불과하였습니다(갑 제19호증 참조). 이 11억 원을 위 원리금 12억 1,000만 원에 지연손해금, 원본의 순서로 총당하면 원금 중 1억 1,000만 원이 남게 됩니다. 결국 2017. 8. 31. 당시, 원고 우방캐피탈은 피고 김수경에 대하여 위 근저당권으로 담보되지 않는 1억 1,0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3) 2017.8. 31. 당시 피고 김수경의 재산상태

당시 피고 김수경은 ① 원고 우방신용에 위 2억 6,620만 원, ② 원고 우방캐피탈에 위 12억 1,000만 원의 각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외에도, ③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1억 3,000만 원(제2부동산의 1번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갑 제11호증), ④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5,000만 원(제2부동산의 2번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갑 제12호증), ⑤ 최상수에게 1억 원(제2부동산의 3번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갑 제13호증), ⑥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3억 원(제3부동산의 1번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갑 제14, 15호증), ⑦ 연홍보에게 1억 원(임차보증금반환채무; 갑 제16, 17호증), ⑧ 신용보증기금에 2,000만 원(갑 제18호증), ⑨ 피고 박수용에게 3,000만 원(갑 제16호증), 총 22억 620만 원의 각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2017.8.31. 당시, 피고 김수경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은 위 공장용지(당시 시가 11억 원), 제2부동산 (당시 시가 5억 원), 제3부동산 (당시 시가 3억 3,000만 원)으로서 동인의 적극재산액은 합계 19억 3,000만 원에 불과하여, 피고 김수경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습니다.

4) 피고 김수경의 사해의사 및 피고 박수용의 악의

따라서 피고 김수경의 2017.8.31.자 제2부동산 매도행위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피고 김수경이 원고들을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더욱 감소시키는 행위임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이고, 피고 박수용 역시 피고 김수경의 사위로서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박수용 사이에서, 피고 박수용과 피고 김수경이 제2부동산에 관하여 2017. 8. 31. 체결한 매매계약은 아래에서 원상회복을 구하는 범위 내에서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합니다.

5)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제2부동산에 대한 위 매매계약 후,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2번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7. 9. 15. 그 피담보 채무 5,000만 원이 변제되어 말소되었고(갑 제10, 12호증), 최상수의 3번 근저당권설정등기도 2017. 9. 25. 피고 박수용이 그 피담보채무 1억 원을 변제하여 말소되었습니다(갑 제10, 13호증).

그러므로 피고 박수용은, 제2부동산의 현재의 가액 5억 원에서 말소된 2번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5,000만 원(갑 제12호증), 3번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1억 원 및 아직 말소되지 않은 1번 근저당권의 사해행위 당시의 피담보채무액 1억 3,000만 원(갑 제11호증)을 공제한 나머지 2억 2,000만 원 중, 원고 우방캐피탈에게는 사해행위 당시의 원금 1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위 사해행위일 다음날인 2017. 9. 1.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월 1%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우방신용에게는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 피고 김수경의 2017. 9. 24.자 사해행위

1) 피고 김수경의 2017. 9. 24.자 매매

피고 김수경은 2017. 9. 24. 당시 시가 3억 3,000만 원 정도이던 제3부동산을 오빠인 피고 김수철에게 3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17. 9. 25. 접수 제2975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갑 제14호증). 피고 김수철은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17. 9. 26. 제3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최종찬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17. 9. 27. 접수 제33456호로 채권최고액 3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갑 제14호증).

2) 2017. 9. 24. 당시 피고 김수경의 재산상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2017. 8. 31. 당시 피고 김수경에 대하여 원고 우방신용은 2억 6,620만 원, 원고 우방캐피탈은 근저당권으로 담보되지 않는 1억 1,000만 원의 채권을 포함한 12억 1,0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2017. 9. 24.에 이르러 피고 김수경은 원고들에게 위 각 금액을 초과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피고 김수경은 2017.9. 24. 당시 원고들 외에도 ①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1억 3,000만 원(갑 제11호증), ② 최상수에게 1억 원(갑 제13호증), ③ 신용보증기금에 2,000만 원(갑 제18호증), ④ 김수철에게 3억 원의 각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피고 김수경은 2017. 9. 24. 당시 20억 2,620만 원을 초과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반면, 적극재산은 당시 시가 11억 원이던 공장용지(갑 제2, 19호증)와 당시 시가 3억 3,000만 원이던 제3부동산밖에 없었으므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습니다.

3) 피고 김수경의 사해의사 및 피고 김수철, 최종찬의 악의

피고 김수경의 2017. 9. 24.자 제3부동산 매도행위는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피고 김수경이 원고들을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더욱 감소시키는 행위임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입니다. 피고 김수철은 피고 김수경의 오빠로서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 최종찬도 김수철의 처남으로서 피고 김수철이 피고 김수경의 사해행위로 인하여 제3부동산을 취득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4)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그러므로 원고들과 피고 김수철, 최종찬 사이에서, 피고 김수철과 피고 김수경이 제3부동산에 관하여 2017.9.24. 체결한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김수경에게, 피고 김수철은 제3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17. 9. 25. 접수 제2975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최종찬은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7. 9. 27. 접수 제3345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3. 결어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은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본 소제기에 이르렀습니다. 끝.

증명방법

1. 갑 제1호증(대출거래약정서)
2. 갑 제2호증(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용인시 구성면 언남리 115-1)
3. 갑 제3호증(근저당권설정계약서)
4. 갑 제4호증(대출명세표)
5. 갑 제5호증(연체이자계산서)
6. 갑 제6호증(배당표)
7. 갑 제7호증(신용보증약정서)
8. 갑 제8호증(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여의도동 38-1 장미아파트 2동 206호)

9. 갑 제9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
10. 갑 제10호증(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공아파트 2차 203동 202호)
11. 갑 제11호증(채무잔액확인서 - 주식회사 국민은행)
12. 갑 제12호증(변제확인서 - 주식회사 하나은행)
13. 갑 제13호증(영수증 - 최상수)
14. 갑 제14호증(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김포시 운양동 347)
15. 갑 제15호증(확인서 - 주식회사 우리은행)
16. 갑 제16호증(부동산임대차계약서)
17. 갑 제17호증(영수증 - 김수경)
18. 갑 제18호증(영수증 - 신용보증기금)
19. 갑 제19호증(감정평가서)

첨부서류

1. 위 증명방법 각 6통
2. 토지대장 등본 3통
3. 집합건축물대장 등본 2통
4. 영수필확인서 1통
5. 송달료납부서 1통
6. 소송위임장 1통
7.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통
8. 소장 부분 5통

8월 21일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목 록

1.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8-1 장미아파트 2동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영등

포구 국제금융로7길 23 철근콘크리트조 경사슬래브지붕 4층 아파트 1층 1270.72m², 2층 1270.72m², 3층 1270.72m², 4층 1270.72m²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8-1 대 79,165.3m²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철근콘크리트조 2층 206호 58.16m²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 79,165.3분의 58.16

2.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715 주공아파트 2차 203동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21 철근콘크리트조 경사슬래브지붕 5층 아파트 1층 570.72m², 2층 570.72m², 3층 570.72m², 4층 570.72m², 5층 570.72m²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715 대 86,394.7m²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철근콘크리트조 2층 202호 49.72m²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 86394.7분의 58.20
3. 김포시 운양동 347 잡종지 500m².

끝.